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91 발의연월일: 2020. 10. 5.

발 의 자: 강민정 · 김진애 · 최강욱

박성준 • 윤재갑 • 오영환

이성만 · 용혜인 · 전혜숙

강은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 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

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중 "임용권자에게"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를 "제66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볍다고"를 "가볍거나 무겁다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 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징계의결) ① (생 략)	제66조(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
	<u> </u>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②
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	
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	
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	
여 <u>임용권자에게</u> 보내어 알려	<u>임용권자 및 관할청에</u>
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
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구) ①
권자는 <u>제54조제3항에 따라 징</u>	<u>제66조제2항에</u>
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u>제66조제2항에</u> 따른 징계의결	
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	<u></u>
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	②
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	
계사유에 비추어 <u>가볍다고</u> 인	<u>가볍거나 무겁</u>
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	<u>다고</u>

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	
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